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행정지원과-9710 |
| 결재일자 | 2015.4.3. |
| 공개여부 | 부분공개(5) |

| 주무관 | 인사담당 | 행정지원과장 | 행정국장 | 부구청장 | 구청장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전영훈 | 윤이남 | 이준기 | 손정수 | 代손정수 | 04/03 김영배 |
| 협 조 | 정무보좌관 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담당 주무관 | | 윤정배 이용식 김용환 김하연 | | |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-
인사규칙 일부 개정계획 (안)



2015. 4.

**행 정 국
행정지원과**

인사규칙 일부 개정계획 (안)

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만으로 부여하던 가점제도를 개선하여 자격증취득과 아울러 복지관련 부서 2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으로써, 마을복지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, 관련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 23조 (자격증등의 가산점)
- 자치행정부 직종개편에 따른 사무처리 가이드라인

II 주요개정 내용

- 제명을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”으로 개정
- 임기제공무원 계약만료에 따른 사전 신규임용절차 규정 신설
- 별표 15 (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) 에 단서조항 신설

➔ 시행 2016. 1. 1.

- 단서조항 :

다만, 행정 및 세무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가산점을 부여하고, 해당업무는 '복지정책과' , '교육청소년과' , '생활보장과' , '어르신복지과' , '여성가족과' , '동 주민센터' 등에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2조 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직무로 한정한다.

- 다른규칙의 개정 : “기능직”용어삭제

Ⅲ

행정 사항

- 입법예고 : 4. 9 ~ 4. 28 (20일간)
 -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구의회 상정 : 5월초
 - 공포 · 시행 : 5월중(예정)
- ※ 단 사회복지자격 가점관련사항은 2016. 1. 1부터 시행

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1부. 끝.